



양재규
정책연구팀 팀장, 변호사

그 많던 제비들은 다 어디 갔나

제비들이 사라졌다.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환경오염이 철새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의 제비는 어디까지나 ‘사람’ 이니까.

제비(또는 제비족) 하면 인구에 회자되는 오래 전 사건이 있다. 세칭 ‘박인수 사건’. 박인수는 해병대 대위 출신으로 제대 후에도 현역 장교라 사칭하며 여성 70여 명의 몸과 마음을 훔쳤다. 요즘 같으면 가능한 일일지 의문부터 든다. 하지만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니 이해가 된다. 한 마디로, 잘 생겼다! 박 씨의 생김새가 궁금한 분들은 네이버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옛날 기사를 검색해보기 바란다.

이 사건이 보다 유명세를 탄 원인 중 하나는 박 씨의 혼인빙자간음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과격적으로 무죄(상급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이 내려졌다)를 선고한 데에 있다.

‘법의 이상에 비추어 가치 있고 보호할 사회적 이익이 있는 정조만을 법은 보호하는 것이다. 정숙한 여성의 건전한 정조만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1심 판결 선고 직후인 1955년 7월 23일 경향신문에 실린 담당 판사의 변이다. 이 기사 내용만으로 판사가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은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 ‘혼인빙자간음죄’의 특성을 모르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말이기도 하다.

혼인빙자간음죄란, 혼인 빙자 등의 방법으로 음행의 상습 없는 여자를 속여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처벌하는 범죄였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 ‘제비방지법’ 정도가 되겠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죄도 지난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근거 규정인 형법 제304조를 위헌으로 결정한 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법률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미미해졌고, 혼전 성행위를 유발하는 빙자의 방법과 관련하여 혼인빙자에 의한 간음으로 부터만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의 과제가 아니다” (2008헌바58)

세상이 변했고 여성의 의식도 달라졌다. 오늘날 대부분의 여성들은 “우리 결혼하자” 속삭이는 남성들의 감언이설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제 제비들은 보다 세련되고 주체적이 된 여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 결혼하자” 따위의 진부한 멘트 외에도 매력적인 외모와 화려한 말솜씨, 외제차 등으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다시 ‘박인수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 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혼인빙자간음’이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우리 결혼하자”와 같은 작업용 멘트에 피해 여성들이 속아 넘어갔어야 한다. 담당 판사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현역 장교라거나 결혼 의사에 혹하기도 했겠지만 오히려, 피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박 씨와 동침한 것이라고 보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당시 언론이 보도해 유행한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말은 ‘혼인빙자간음죄는 제비들의 작업용 멘트를 순진하게 믿은 여성만을 보호한다’ 정도로 읽어야 옳다. 만일 해당 문구를 성적 관념이 자유로운 여성은 ‘범해도 괜찮다’거나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읽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오독이라 할 수 있다.

이 문구와 관련하여 오독하는 또 다른 예도 있다. 흉악범의 얼굴 공개와 관련하여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에게 무슨 인권이나?’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초상만을 보호한다’는 식의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헌법의 정신은 여전히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람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기에 스스로 자신의 인격적 사항에 대해 결정하고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인격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갖는 권리다. 무엇이 보호할 가치 있는 초상인지, 정조인지 함부로 말하지 말자. 